

#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은미 의원)

의안 번호	203
----------	-----

발의연월일: 2023년 11월 22일

발 의 자 이은미 의원

찬 성 자 김광성, 남진삼, 박춘희의원

## 1. 제안이유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무인시스템 확대에 따른 일상 생활에서 자주접하는 식당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주문, 은행 계좌이체 등 생활 문해교육 필요성이 커, 기존 성인문해교육에 디지털 문해교육을 포함하여 지원 확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성인문해교육 정의에 ‘디지털 생활 문해 능력’ 포함(안 제2조 관련)

나. 군수 책무로 생활밀착형 디지털 문해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  
적극 추진 규정(안 제4조 관련)

다. 사업추진으로 디지털 문해 교육 서비스 지원 추가(안 제5조 관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나. 예산조치 : 불임 참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다. 입법예고 : 2023. 10. 30. ~ 2023. 11. 19.(20일간), 의견 없음.

라. 집행기관의견수렴 : 2023. 10. 19.~ 2023. 10. 27. 의견 없음.(기획실-7193)

##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기초생활능력”을 “기초생활능력(정보화흐름에 따른 디지털 생활 문해 능력 포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능력”을 “능력(디지털 생활 문해 능력 포함)”으로 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군수는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생활밀착형 디지털 문해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서비스 지원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성인문해교육”이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성인(이하 “성인”이라 한다) 중 비문해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포함하여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u>기초생활능력</u> 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p> <p>2. “비문해자”란 한글 등을 읽고 쓰는데 필요한 문자해득(이 조례에서 “문해”라 한다)<u>능력</u>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p> <p>3. 4. (생략)</p> <p>제4조(책무) ①·② (생략)</p> <p><u>&lt;신 설&gt;</u></p>	<p>제2조(정의) ----- ----- ---.</p> <p>1. ----- ----- ----- ----- ----- ----- <u>기초생활능력(정보화흐름에 따른 디지털 생활 문해 능력 포함)</u> -----.</p> <p>2. ----- ----- ----- <u>능력(디지털 생활 문해 능력 포함)</u> ---.</p> <p>3. 4. (현행과 같음)</p> <p>제4조(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p> <p><u>③ 군수는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생활밀착형 디지털 문해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제5조(사업추진 및 범위) ① (생략)

② 진흥사업의 추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신설>

5. (생략)

③ (생략)

제5조(사업추진 및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서비스 지원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평생교육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평생교육이용권”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 비용추계서(제5조제2항제5호 관련)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사업추진범위 확대

나. 관련조문

- 개정조례안 제5조(사업추진 및 범위)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서비스 지원’ 신설

##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평창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경비지원 및 대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문해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디지털 문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사업추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므로 예산 증액이 수반되어야 함.
- 성인문해교육 지원 예산규모(본예산 기준)

(단위 : 천원)

연도별	2019	2020	2021	2022	2023
예산액	140,000	155,000	156,000	177,000	177,000

나. 추계 결과

- ‘국가문해교육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디지털 문해교실을 운영하는 기준 [주 2회 / 회당 2시간 / 10주 / 강사 2명]를 기준으로 소요 비용을 산출할 경우, 1개 교실당 4,800천원(산출식 120,000원 x 2회 x 10주 x 2명)의 사업비 필요
- 읍면별로 교실을 개설하여 연 2회 운영할 경우, 매년 76,800천원(산출식 4,800천원 x 8개 x 2회)의 추가 비용이 발생

다. 자원조달 방안

- 평창군 자체수입으로 조달

##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인재육성과장 여정은
연락처	(033) 330 - 202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b>세 입</b>		76,800	76,800	76,800	76,800	76,800	384,000
지방세수입		76,800	76,800	76,800	76,800	76,800	384,000
<b>세 출</b>		76,800	76,800	76,800	76,800	76,800	384,000
성인문해교육지원							
301 일반보전금							
14 기타보상금							
○ 문해교육사 활동비		76,800	76,800	76,800	76,800	76,800	384,000
<b>재원 조달</b>		76,800	76,800	76,800	76,800	76,800	384,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76,800	76,800	76,800	76,800	76,800	384,000
	지방세	76,800	76,800	76,800	76,800	76,800	384,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